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 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총칭하여 “본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자”라 함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및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와의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 ② “계약 상대자”라 함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현금,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수행계획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CDR결과물,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 ② 계약문서 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1순위 계약서
 - 2) 2순위 용역계약특수조건(본 계약관련 특수조건)
 - 3) 3순위 용역계약일반조건
 - 4) 4순위 용역수행계획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CDR결과물
 - 5) 5순위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용역의 착수)

-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계약자”에게 착수에 따른 예정 공정표 및 기타 “계약자”가 지정한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의 중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용역 착수 후 “계약자”로부터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 내역서, 일위대가표의 제출 요청이 있을 시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계약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 용역이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용역의 개시일은 쌍방 실무책임자가 계약 전 선착수에 합의한 경우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합의서상 착수일을 실제 용역 착수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의 수행 및 감독)

-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 및 시방서, 작업지시서,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과정 및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지체상금)

- ①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1.5/1,000를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 ② “계약 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용역수행 연기원을 “계약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거나 또는 지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시킨다.

제9조 (용역의 변경 또는 중지)

- ① “계약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 제1항의 변경, 중지로 인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검수 또는 검사)

- ① “계약 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계약서에 정한 결과물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的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 또는 검사를 한다.
- ③ 용역수행의 성질상 용역수행 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검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검수 기준이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승인을 기준으로 하며, 용역수행의 결과가 관련 대외 기관의 승인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의 결과를 검수 완료로 한다.
- ⑤ “계약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的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⑥ “계약 상대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 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 검수 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인수)

“계약자”는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물을 인수 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그 결과물의 일부에 대하여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① 용역 목적물의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的 부담으로 한다.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같다.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 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的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대가의 지급)

-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자”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조건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계약자”는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금액의 변경)

“계약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공급원이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조정 요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하도급)

- ① “계약 상대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계약자”的 승인을 얻은 하도급 대가는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종업원 및 고용원)

- ① “계약 상대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 용역에 투입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해당 용역에 투입할 것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的 종사원 중 부적당한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하자보증금)

“계약 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계약서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증금을 “계약자”에게 현금,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유지보수 의무)

- ① 하자보증 기간내의 유지보수는 “계약자”의 통보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전문요원에 의하여 시행하며, “계약 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조치하여 “계약자”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② 하자보증기간 만료후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유지보수계약 체결에 의하며,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수명기간 동안 재설계 등 무상보수를 실시하고 불량요인을 제거할 책임을 갖는다.
- ③ “계약 상대자”가 제1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조치한 후 발생된 모든 비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에 “계약 상대자” 및 원천 공급사의 유지보수 계약이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的 승인 하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계약 상대자”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종료 후 또는 “계약자”가 정하는 시기에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별도 지정 시에는 “계약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 물품이 최적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기술전수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고, 부품구매 등 실 발생비용 등을 상호 협의한다.
- ⑥ “계약 상대자”는 사업 양수도시 양수인이 제2항 규정을 계속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다음의 경우 “계약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지며, “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부정 행위가 있었을 경우.
 - 2) “계약 상대자”가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지연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的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4)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시행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계약자”的 서면 통보를 받고도 15일 이상 경과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5) “계약 상대자”가 파산,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상태에 빠지거나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계약자”에게 공급한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계약 상대자”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한 경우.
 - 6) 기타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이외에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제공 받은 용역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계약자”的 요구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의 용역수행결과물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 상대자”에게 기 지급한 선급금(착수금)이 있을 때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며,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的 계약목적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 상대자”는 기 성과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선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선금액 및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특허, 상표 및 저작권)

“계약 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 ①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的 승인을 얻어 “계약자”的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계약자”的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 상대자”的 고용인에 대하여도 “계약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용역수행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용역수행의 지연으로 “계약자”的 목적사업에 직,간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변경신고)

“계약 상대자”는 주소지, 상호, 대표자 등 계약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25조 (불성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상대자”가 “계약자”的 불성실업체 관리지침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계약자”的 불성실업체 관련 지침에 의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손해배상)

본 계약 제8조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이행완료 확인)

- ① “계약자”는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각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 받은 후 계약 또는 하자 사고에 대한 청구기간(계약종료 후 2년)이 완료되기 전에는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및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계약 및 하자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구기간 중에 계약 불이행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계약자”的 판단에 따라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및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다.

제28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는 “계약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的 계약관행 및 해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관할법원은 “계약자”的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